

선 람	기관의장



# 익산시 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565호 2019년 4월 30일

발행자 : 익산시장

발행처 : 홍보담당관

## 고 시

- 익산시 고시 제2019-36호 수은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1
- 익산시 고시 제2019-40호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 2
- 익산시 고시 제2019-4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4

## 입법예고

- 익산시 입법예고 제2019-914호 익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
- 익산시 입법예고 제2019-958호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

## 공 고

- 익산시 공고 제2019-934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 25
- 익산시 공고 제2019-965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30

회 람									

• 익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iksan.go.kr>

• 홍보담당관 TEL : (063) 859-5026



**익산시 고시 제2019-36호**

## 수은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거 『수은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 익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수은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가. 수은마을 특색을 반영한 경관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  
나.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정착으로 공동체 의식 복원

3. 주요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 : 빈집정비, 귀농인의 쉼터(생각의 집), 쉼이 있는 이야기길  
나. 지역경관개선 : 마을진입로정비, 담장정비, 마을 상징공간 조성, 생태소공원 조성

다. 지역역량강화 : 주민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컨설팅, 부대비용

4. 사업비 : 980백만원(국비 686, 지방비 294, 자부담 11)

5. 사업시행기간 : 2017 ~ 2019(3년간)

6. 사업시행자 : 익산시장[일괄위(수)탁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촌활력과(☎063-859 -7223) 및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063-860-0086)에서 열람 가능

**익산시 고시 제2019-40호**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익산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4월 18일

**익 산 시 장**

○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 지역

(단위: 천㎡)

읍면동	법정리·동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고시면적	부 과 지 역
합계		146,734	
읍면계		55,283	
함열읍	와리, 남당리 흘산리, 다송리	11,021	함열읍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오산면	송학리, 장신리	1,049	오산면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황등면	황등리, 동연리 죽촌리, 울촌리 신기리	8,407	황등면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용안면	교동리, 덕용리 중신리, 창리 석동리, 난포리 송산리, 동지산리, 철목리	8,806	용안면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낭산면	구평리, 용기리	1,001	낭산면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여산면	여산리, 제남리 두여리	3,862	여산면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금마면	동고도리, 서고도리 용순리	6,086	금마면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왕궁면	광암리, 홍암리 온수리, 동촌리 왕궁리	5,078	왕궁면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춘포면	덕실리, 오산리 신동리, 창평리 용연리, 춘포리	8,180	춘포면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삼기면	서두리, 오룡리 연동리	1,793	삼기면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동계		91,451	
중앙동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	1,748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평화동	평화동, 목천동	931	평화동, 목천동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인화동	주현동, 인화동	2,550	주현동, 인화동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동산동	동산동, 금강동	3,512	동산동, 금강동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마동	마동	2,946	마동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남중동	남중동	3,494	남중동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모현동	모현동	6,953	모현동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송학동	송학동	2,685	송학동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영등동	영등동	5,821	영등동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어양동	어양동	4,074	어양동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신동	신동, 만석동 현영동, 신용동	15,072	신동, 만석동, 현영동, 신용동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팔봉동	신흥동, 팔봉동 덕기동, 석왕동, 은기동, 용제동, 석암동	32,555	신흥동, 팔봉동, 덕기동, 석왕동, 은기동, 용제동, 석암동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삼성동	부송동	9,092	부송동 관내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

## 부 칙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고시 제2019-4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익산시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19년 4월 30일

### 익 산 시 장

1. 사업명 : 영등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무궁화신탁 대표 최병길
3. 위치 : 익산시 영등동 298-1 외 2필지
4. 사업내용
  - 가. 대지면적 : 2,666.4m<sup>2</sup>
  - 나. 건축면적 : 968.71m<sup>2</sup>
  - 다. 연면적 : 11,035.41m<sup>2</sup>
  - 라. 규모 : 지하2층/지상15층, 주1동, 271세대
  - 마.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바. 공급방식 : 공동주택(아파트) / 임대
  - 사. 사업비 : 24,119백만원
  - 아. 사업기간 : 2016. 12. ~ 2020. 12.
5. 설계도서 : 익산시 주택과 비치
6. 변경승인일자 : 2019. 04. 22.
7. 변경내용 : 사업주체 변경 (이상범, (유)해오름종합건설 ⇒ (주)무궁화신탁. 끝.

**익산시 입법예고 제2019-914호**

「익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9430호, ‘18. 12. 24. 일부개정 및 시행)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요구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유형 추가 등 (안 제5조의6 정비)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유형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4호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안 제12조의3 신설)
  - 갑질의 개념, 갑질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지함.
  -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직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직무관련자 및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금지, 직무관련자 및 하급기관에 대한 포괄적·예비적 갑질 금지 규정 신설하도록 함.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안 제15조의2 신설)
  -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 전 제공 요구 금지 규정 신설하도록 함.
  - 부당한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 공직자의 거부 의무 및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보고 의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안 제15조의3 신설)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함.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안 제20조 정비)
  -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대상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2개 행위기준을 추가하도록 함.
  
-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24조 정비)
  -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내용에 5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금품등 수수금지, 알선·청탁등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함.
  
- 개정규칙에 맞게 행동강령 별지 서식을 신설
  - 신설(별지 제15호)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익산시청(참조 감사담당관, 전화 063-859-5018, FAX 063-859-5051, 전자우편 kkebak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3) 제출할 곳

우 54582/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청 감사담당관

다.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감사담당관(063-859-50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규칙 제 호

**익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1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및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포함)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

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 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 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5조의2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0조제1항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를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의 2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lt;신 설&gt;</p>	<p>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및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포함)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p>

<p>&lt;신 설&gt;</p>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u></li> <li>2. <u>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u></li> <li>3. <u>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u></li> <li>4. <u>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u></li> <li>5. <u>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u></li> </ol> <p>제15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p>
--------------------	---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 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

<p>&lt;신 설&gt;</p> <p>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 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 의등의 사례금 수수,----- -----.</p> <p>② (생략)</p> <p>제24조(교육)</p> <p>① (생략)</p> <p>&lt;신 설&gt;</p>	<p><u>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 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p> <p><u>제15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에 대 한 처리) 제15조의2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 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p> <p>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 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 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 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교육)</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u></li> <li>2. <u>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 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u></li> </ol>
--	---

<p>&lt;신 설&gt;</p> <p>② (생략)</p>	<p><u>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u></p> <p>3. <u>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u></p> <p>4. <u>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u></p> <p>5. <u>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	--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별지 제15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30%;">접수번호</th> <th style="width: 30%;">접수일자</th> <th style="width: 40%;">처리일자</th>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신고자</td> <td style="width: 30%;">성명</td> <td style="width: 50%;">생년 월일</td> </tr> <tr> <td></td> <td>소속</td> <td>직위 (직급)</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요구자</td> <td style="width: 30%;">성명</td> <td style="width: 50%;">직위 (직급)</td> </tr> <tr> <td></td> <td>소속</td> <td></td> </tr> </table> <p>요구받은 사항</p> <hr/> <p>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table style="margin-lef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r> </table> <p style="margin-left: 100px;">신 고 자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div>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 월일		소속	직위 (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 (직급)		소속		년	월	일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 월일																	
	소속	직위 (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 (직급)																	
	소속																		
년	월	일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9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 익산시 입법예고 제2019-958호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30.

# 익 산 시 장

##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민간참여 기회 확대
- 나.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전문가 및 환경정책 관련국장으로 재구성
- 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위원회의 건의사항 수용
  - 1)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환경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 2) 환경관련 부서간의 소통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
- 라.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

###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위원을 “13명 이내” 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여 정책선정의 다양성 제고(안 제3조제1항)
- 나. 당연직 위원을 “환경분야 업무 관련 공무원 4명” 으로 하여 환경·청소·

산림·하수도 담당과장이 하던 것을 “환경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 으로 하여 중요도 상향조정(안 제3조3항)

다. 위원에 시의원을 추가하여 환경정책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의회와 협의추진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라. 간사는 “환경관련 주무계장” 이 되도록 하던 것을 “환경부서장” 이 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마.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 해야 함 함을 신설(안 제8조의2)

### 3. 따로 붙임

가.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0일까지 익산시장(참조 : 녹색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3400@korea.kr

2) 주소 : (우)54622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녹색환경과

3) 팩스 : 063-859-4445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녹색환경과 담당자(063-859-54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조례 제 호

##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3명” 을 “20명” 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환경분야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2. 익산시의회 의원

제8조제2항 중 “환경관련 주무계장” 을 “환경부서장” 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시책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3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환경분야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u></p> <p>③ 위원은 <u>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li> <li>3. <u>환경분야 업무 관련 공무원</u></li> </ol>	<p>제3조(구성) ① ----- ----- <u>20명</u>----- -----.</p> <p>② ----- --- <u>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환경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u></li> <li>2. <u>익산시의회의원</u></li> <li>3. (중전 제1호와 같음)</li> <li>4. (중전 제2호와 같음)</li> </ol> <p><u>&lt;삭 제&gt;</u></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u>환경관련 주무계장</u>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p> <p><u>&lt;신 설&gt;</u></p>	<p>제8조(간사와 서기) ① ----- ----- -----.</p> <p>② ----- <u>환경부서장</u> ----- -----.</p> <p><u>제8조의2(시책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u></p>

##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9.(생략)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익산시 공고 제2019-934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황등도선-외화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 익 산 시 장

**1.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황등	면도	황팔선	104	황등면 황등리 1739-88	월성동 627-7	0.42		8.0	6.5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

2. 사업시행기간 : 2018. 08. ~ 2021. 12.

**3.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 램 기 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 램 장 소 : 익산시청 건설과(☎ 063-859-5534)

4. 토지세목조서 : 붙임내역참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 조서(1/4)

공사명 :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지번	지 목	면적 (㎡)	편입 지번	면적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1	황등면 황등리	1739-88	도	9,009	1739-88	177			건설부				
2	"	1736-33	구	32,550	1736-33	242			농림수산부				
3	"	1399	답	512	1399-3	52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509, 110동505호 (어양동,익산자이아파트)	박○숙				
4	"	1398	도	5,039	1398	208			국토교통부				
5	"	1404-1	도	3,060	1404-1	66			건설부				
6	"	1397-1	답	1,198	1397-1	22			국토교통부				
7	"	1404-2	도	1,572	1404-2	182			국토교통부				
8	"	1397	답	2,769	1397-2	151		전라북도 이리시 월성동 542	정○웅				
9	"	1405	답	3,191	1405-3	21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5길 160(월성동)	김○은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06	황등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10	"	1396	답	3,967	1396-1	142		전라북도 이리시 월성동 542	정○웅				
11	"	1406	답	3,960	1406-1	78		전라북도 익산시 석탄동 971	김○남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 조서(2/4)

공사명 :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지번	지 목	면적 (㎡)	편입 지번	면적 (㎡)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12	황등면 황등리	1738	도	1,894	1738	1,818			건설부				
13	"	1592	답	3,993	1592-1	16		익산시 남중동 455-5 이화남중아파트 1006호	강○덕				
14	"	1737	도	4,496	1737	4,365			농림수산부				
15	"	1593	답	4,000	1593-1	25		전라북도 익산시 월성동 520-1	강○식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익산지사)	한국농어촌 공사	근저당	
16	"	1605	답	3,980	1605-1	36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890 송학지안리즈 106-305	반○철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1가 132-110	익산원예농 업협동조합	근저당	
17	"	1594	답	4,000	1594-2	27		익산시 신동 156-18	차○호				
18	"	1604-2	답	1,990	1604-4	12		전라북도 익산시 외화길 26-5 (월성동)	엄○석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698(인화동2가) (팔봉지점)	익산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19	"	1595-1	답	2,000	1595-3	11		익산시 월성동 543-2	김○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익산지사)	한국 농어촌공사	근저당	
20	"	1604-1	답	1,990	1604-3	12		전라북도 익산시 외화길 32-2 (월성동)	한○례				
21	"	1595	답	2,000	1595-2	10		전라북도 익산시 월성동 543-2	김○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익산지사)	한국 농어촌공사	근저당	
22	"	1603	답	3,980	1603-1	29		전라북도 익산시 임상동 208-1	권○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6, 206동1202호(호성동1가 호성동진흥터블파크2단 지아파트)	임재규	근저당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 조서(3/4)

공사명 :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지번	지 목	면적 (㎡)	편입 지번	면적 (㎡)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23	황등면 황등리	1605	답	3,980	1605-1	36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890 송학지안리즈 106-305	반○철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1가 132-110	익산원예농 업협동조합	근저당	
24	"	1594	답	4,000	1594-2	27		익산시 신동 156-18	차○호				
25	"	1604-2	답	1,990	1604-4	12		전라북도 익산시 외화길 26-5 (월성동)	엄○석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698(인화동2가) ( 팔봉지점 )	익산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26	"	1595-1	답	2,000	1595-3	11		익산시 월성동 543-2	김○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익산지사)	한국 농어촌공사	근저당	
27	"	1604-1	답	1,990	1604-3	12		전라북도 익산시 외화길 32-2 (월성동)	한○례				
28	"	1595	답	2,000	1595-2	10		전라북도 익산시 월성동 543-2	김○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익산지사)	한국 농어촌공사	근저당	
29	"	1603	답	3,980	1603-1	29		전라북도 익산시 임상동 208-1	권○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6, 206동1202호(호성동1가 ,호성동진흥터블파크 2단지아파트)	임재규	근저당	
30	"	1596	답	1,983	1596-3	10		익산군 함열읍 와리 547-9	김○래				
31	"	1602	답	3,560	1602-1	22		전라북도 익산시 월성동 530	정○락				
32	"	1599	전	985	1599-2	23		전라북도 익산시 몽환신화길 146(월성동)	윤○숙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 조서(4/4)

공사명 :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지번	지 목	면적 (㎡)	편입 지번	면적 (㎡)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33	황등면 황등리	1600	전	833	1600-2	12		전라북도 익산시 몽환신화길 146(월성동)	윤○숙				
34	"	1601	답	3,154	1601-1	63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222-11	윤○홍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익산지사)	한국농어촌 공사	근저당	
35	"	1736-21	구	35,798	1736-21	250			농림수산부				
36	"	708-4	구	9,867	708-4	260			농림수산부				
37	월성동	627-2	대	225	627-6	9	1/4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1008-1	김○식				
							1/4	이리시 남중동 86-209	김○기				
							1/4	이리시 월성동 398	김○묵				
							1/4	이리시 월성동 397	김○두				
38	"	627-5	전	71	627-7	27	1/4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1008-1	김○식				
							1/4	이리시 남중동 86-209	김○기				
							1/4	이리시 월성동 398	김○묵				
							1/4	이리시 월성동 397	김○두				

**익산시 공고 제2019-965호**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 익 산 시 장

#### 1.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9년 1월 1일

나. 대상주택수 : 31,140호

(단독 24,225호, 다가구 1,469호, 다중 5호, 주상복합 4,702호, 기타 주택 739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 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9. 4. 30. ~ 5. 30.

나. 제출자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와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 내 제출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바. 문의사항 : 세무과 과표계(전화 859-5612, 5617)